

制定된 圖書館振興法施行令 全文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인

1991년 4월 8일

국무총리 노재봉

국무위원

문화부장관

이어령

◎대통령령 제13,342호

◇圖書館振興法施行令 制定理由

圖書館振興法이 制定(1991. 3. 8, 法律 制4352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公共圖書館은 어린이·老人 및 障礙人을 위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도록 하고 奉仕對象基準人口가 2萬人이상인 公共圖書館의 경우에는 閱覽室외에 參考閱覽室, 連續刊行物室 및 視聽覺室 등을 갖추도록 함(令 第3條 및 別表1).
- 나. 圖書館發展委員會는 文化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中央行政機關의 圖書館業務 關聯局長과 圖書館 및 出版에 관한 專門人士중에서 文化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8條).
- 다. 國內外圖書館間의 資料의 流通을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은 資料目錄의 國際交流 각종 書誌의 發刊·配布·分擔收書와 相互貸借制의 施行, 國際機構의 加入 및 活動등의 業務를 수행하도록 함(令 制16條).
- 라. 國立中央圖書館은 다른 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管理와 운영, 資料의 선정·交換 및 國際交流, 國民讀書運動, 示範圖書館의 운영, 地域文化事業의 展開등을 指導·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

마. 國立中央圖書館長이 讀書施策을 수립할 때에는 年齡·職業·階層別 讀書運動, 兒童과 靑少年의 讀書指導, 障礙人 및 脆弱地域, 住民의 讀書運動, 教育·文化施設과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19條).

바. 國立中央圖書館에 司書研修課程을 두어 研修를 받고자 하는 司書職員등이 5년에 1회이상 研修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圖書館의 長은 研修職員이 研修를 받는데 협조하도록 함(令 第20條).

사. 당해 圖書館長 및 地域內 人士등으로 圖書館運營委員會를 구성하고, 地域內 각종 文化施設과의 相互協力과 당해 圖書館의 資料構成方針, 讀書運動計劃수립등 圖書館後援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도록 하여 圖書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令 第24條 및 第25條).

아. 公共圖書館에서 받을 수 있는 使用料의 범위를 데이터베이스 利用手數料, 개인研究室·會議室 등 利用手數料, 複寫料, 講習料 및 入館料등으로 하되, 國·公立公共圖書館은 1992년부터 入館料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一般人的 이용을 자유롭게 함(令 第30條 및 附則 第7條).

자. 文化部長官의 權限중 私立公共圖書館, 專門·特殊圖書館의 登錄 및 指導·지원業務를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및 道知事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第34條).

차. 圖書館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國·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을 司書職으로 補하도록 하되, 1996年 12月 31日까지는 行政職 또는 司書職으로 補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특수도서관의 이용자) 법 제 2조제 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군사시설 또는 교도소에서 복무·근무 또는 복역중인 자 기타 특수환경에 처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법 제 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 법 제 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등) ①법 제 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사서직원은 별표 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 6 조(시책) 문화부장관이 법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이하 “사서직원등”이라 한다)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서직원등의 연수
2. 사서교육과정의 개선

제 7 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③자료(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제외한다)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이 내로 하되, 당해 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교육부·문화부·보건사회부·체신부·총무처 및 과학기술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과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 1인
 2.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회의 장
 3.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기타 도서관 및 출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의 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문화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도서관의 설립, 시설·자료의 확충 및 운영의 보조
2.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의 보조
3.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단체의 연구활동 지원
4. 도서관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5. 기타 도서관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②문화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서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문화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3월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문화부장관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

관과 그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문화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 1항제 3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내외 자료의 조사 및 수집
2. 자료목록의 국제교류
3. 국가서지·납본속보·종합목록 기타 필요한 서지의 발간·배포
4.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도의 수립·시행
5. 국내외 희귀자료의 복제와 배부
6.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제17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에 법 제16조제 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 교류 대상국가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 1항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자료의 선정·교환·이관·폐기·제작 및 대차
3. 국민독서운동의 지도·지원
4. 지역별·도서관종류별 시범도서관의 운영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자료의 국제교류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제19조(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 법 제16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령별·직업별·계층별 독서운동
2.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 활동
3. 장애인등을 위한 독서활동
4.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
5. 문화시설·교육시설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제20조(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직원(사서직원등과 도서관 봉사업무에 관련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연수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구분하되, 일반연수과정은 연수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직원이 5년에 1회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각 도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기타 도서관직원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1조(제공 및 납본자료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도

2. 슬라이드
3. 전산화 자료중 테이프 및 디스크
4. 마이크로 형태물중 창작된 자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납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납본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⑤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납본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하여 국가서지 또는 추천자료서지에의 수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부여신청서에 출판사의 연혁·출판 실적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번호의 부여시에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대상·절차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⑤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그 자료에 문헌번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23조(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①한국문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련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도서관계 및 출판계 인사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구역내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6조(운영위원회 회의등) 제11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 법 제25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의 절차) ①법 제25조제3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에정일 7일전까지 피청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의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립공공도서관등의 폐관신고) 법 제27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폐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폐관신고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장기간 강습·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5. 입관료(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협력망등의 구성) ①협력망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표관이 지방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구(자치구에 한한다)의 도서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방대표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앙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망운영계획)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의장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대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력망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의 장은 협력망 상황을 연차별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의 장이 보고할 때에는 지역대표관과 협력망에 참가하는 각종 도서관은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조사 요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화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등) 문화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기금중 특정도서관 또는 특정지역 도서관의 진흥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
2. 법 제25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및 서류제출 요구

4. 법 제27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의 수리

5.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등록

6.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국·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임용시기)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부칙 제5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이 영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동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 부칙 제5조제4항 또는 동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후 2년이 내에 문화부장관에게 해당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교

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 6조(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과 별표 2에 의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제 7조(국·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한 경과조치) 국·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는 제30조제 5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 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 3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저작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제 1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 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봉사대상기준인구 (인)	시 설		자 료	
	건 물 (제곱미터)	열 램 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가 (권)
2만미만	264이상	60이상	3,000이상	300이상
2만이상 5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5만이상 10만미만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10만이상 3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50만미만 30만이상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50만이상	4,950이상	1,200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비고 : 가. 봉사대상기준인구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당해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구·읍·면의 인구를 말한다.

나.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이상인 공립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는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마.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외에 연속간행물을 봉사대상 1천인당 1종, 시청각자료를 봉사대상 1천인당 10종을 각각 갖추고, 기타 향토자료·전산화자료·행정자료등을 갖추어야 한다.

바. 사립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봉사대상기준인구 2만인미만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하며, 자료기준은 자체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사대상	시 설 및 자 료 기 준
공 중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특수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사대상	시 설		자 료	
	건 물	기계·기구	장 서	녹음테이프
시 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66제곱미터 · 서고 : 면적의 25퍼센트 이상 · 인쇄실 : 면적의 35퍼센트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3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1대, 점자인쇄기 1대, 점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여야 한다.	1천500권이상. 다만,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1천권을 추가하여야 한다.	500점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200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비고 : 가. 건물면적이 99제곱미터이상일때에는 녹음실, 열람실 및 사무실의 크기가 각각 건물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물 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등의 건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제 4조 관련)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인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에는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둔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제5조 관련)

자 격	자 격
1급 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 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화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있는 사람으로서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 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 법 제3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에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